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관광객이 언제든지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 배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경비 및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경고 및 선발취소,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55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의의원 : 한은경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관광객이 언제든지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 배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경비 및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경고 및 선발취소,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오산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오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객이 언제든지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선발해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시장은 시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

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들의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시의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
5.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안내와 홍보활동 수행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 및 해설 활동을 수행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郷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해 위촉한다.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의 역사, 문화, 관광, 생태환경 등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
3.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사람
4.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
5.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사람

② 해설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6조에 따라 해설사 선발이 취소 된 경우 위촉이 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해설사 배치)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수행) 해설사가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모가 단정한 상태로 정해진 활동복을 착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일 당일 기후에 따라 활동복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를 패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에서 지원하는 장비와 기자재, 시설물 등이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당일 활동사항을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활동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2. 활동복 지급(2년에 한차례)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
5. 직무 수행에 따른 상해보험 의무적 가입 및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활동시간 등) ① 해설사의 활동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장소 특성에 따라 활동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 및 추석 명절 연휴
2.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설사의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배치장소의 여건 및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활동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시 관내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활동정지)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설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정지 기간은 당해연도 위촉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및 치료
2. 임신·출산, 육아
3. 직계 존·비속의 병간호

②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정지를 신청할 때는 활동정지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정지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동정지 중인 해설사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및 견학 등의 참여, 활동복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6조(경고, 선발취소) ①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을 취소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를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 취소 기준

(제16조 제2항 관련)

연번	위 반 내 용	조치사항
1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경 고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
5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6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
7	보수·직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8	관광객, 동료, 담당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협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
9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였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
10	활동정지 신청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11	연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	"
12	해설활동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한 경우	"
13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4	활동정지기간 종료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
15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
16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복을 입지 않고 해설활동을 한 경우	"
17	부주의로 시설물 또는 장비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18	그 밖에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 소
2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
3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4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5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6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
7	활동정지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미복귀한 경우	"
8	건강상 문제로 시장이 지원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
9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10	주민등록 주소지를 오산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
11	본인이 사망한 경우	"

※ 유료해설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유료 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경고조치하지 아니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의2. (생략)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 5. (생략)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7. ~ 8. (생략)

② ~ ⑦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 ① 법 제48조의6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발급) 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수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특별시·도·광역시자치단체장 명의로 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표식)를 발급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는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별첨양식⑥)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D 카드가 발급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약서’(별첨양식 ①)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의 ID 카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2.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3.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개선 설문조사 계획
4.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람동선 개발,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관광해설 프로그램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전공분야 및 전문지식, 교통, 해설언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특정 장소에 상시 배치해서는 아니 되며, 활동일 1일 기준으로 해설사 1인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의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배치장소를 선정할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영역 확대 차원에서 국 도립공원 등 자연 생태자원 및 숲, 농·어촌 체험관광지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보관광코스, 시티투어, 체험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 초·중등 수학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수학여행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⑧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해설활동 이외의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안내소 직원 대신 관광안내소에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대기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안내소 활용은 가능하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활동비의 지급)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으로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해설역량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수습기간은 활동일수에 제외된다. 단 식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3. 주유비, 간식비 등 제9조 제4항에 따른 활동비 이외의 비용
4. 문화관광해설사의 외부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참여(단, 교통비에 준하는 실비 지급은 가능)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 관리)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군·구에서 양성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시·도·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 관리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활동일지(별첨양식 ④)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교육 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익월 10일전까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www.ctgs.kr)에 입력해야 한다.

⑤ 특별시, 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해설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객 민원분석, 해설사 근태관리를 위한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별첨양식 ⑤ 활용)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행정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취소)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동 경고 및 취소시킬 수 있다.

1. 경고

- 가.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 나.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 다.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라.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 마.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바.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 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아. 관광객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 자.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 차.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카. 연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
- 타.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2. 취소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나.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라.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마.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1호 바목 적용 시, 유료해설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전에 (별첨 양식 ⑦ 문화관광해설사 유료해설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취소된 자는 다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선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된 시점에서 5년간은 지원 할 수 없다.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할 경우 특별시·도·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특별시·도·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종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홍보 및 사전예약제도)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터넷, 모바일 등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관한 안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①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 설비,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들(타지방자치단체 활동 문화관광해설사 포함)에 한하여 관내 문화재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주차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